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관한 연구

Care Labeling Compliance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박 광 회

Dept. of Clothing & Textiles, Keimyung Univ.
Kwang Hee Park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 II. 연구방법 | IV. 요약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losely care labels comply with the 1984 version of the Care Labeling Rule, as well as the change in degree of compliance prior to and after the 1988 IFI care label campaign. Label information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country of origin. The information was also divided into two sets. The basis for dividing the data into two sets was the beginning of the IFI care label campaign in 1988. The data were obtained from 1147 checklists. The information for 1147 samples in six clothing categories were collected from department, specialty, and discount stores. Chi-square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hypothese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incorrect labels on domestically produced garments compared to imported garments in set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t 2.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incorrect labels between in set 1 and in set 2.

I. 서 론

소비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상품의 속성(attributes), 성능(performance), 손해배상조건(claims)의 차이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므로써 향상된

다.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소비자는 상품의 특성을 잘못 평가하여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된다 (Mazis, Staelin, Beales, & Salop, 1981). 정보는 구매 전 정보탐색과 연속되는 탐색(on-going search)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구매전 탐색은 상품라벨에 의해 얻

어지는 정보, 상점 그리고 판매원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얻어지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세가지 요인 중에서 상품라벨(product label)은 상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상품라벨정보는 의류제품의 Care Label(섬유 혼용률 및 취급상 주의표시가 표기된 라벨)과 같이 라벨용어가 규정된 경우에 더 적용된다.

의류제품은 섬유생산, 직조, 염색 및 가공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소비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성질을 갖는 제품에 대해 구매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과거 합성섬유 개발 및 생산과정 발달 전에는 소비자는 특정 의류제품에 관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과시에는 섬유생산, 직조, 염색, 가공방법이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전에 사용했던 유사한 제품의 세탁방법에 기초를 두어 세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의류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섬유에 관한 정보에 상당히 의존한 것으로 그 의복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세탁방법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의류제품과 상표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이상 새로운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세탁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Fortess, 1971). 소비자는 제품종류와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세탁후 나타나게 될 세탁효과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Laun, 1969) 다양한 의류제품에 대한 적절한 세탁방법을 선별할 수 없을 것이며(Flynn, 1969) 소비자가 부족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세탁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1. Care Label 제정에 대한 배경 및 문제점

미국의 경우 1938년초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Black & Judelle, 1938), 1971년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은 모든 의류제품은 세탁방법을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Care Label을 영구

적으로 부착할 것을 결정하였다(Federal Trade Commission, 1971). 하지만 신발류, 장갑, 모자와 같은 제품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Nagel, 1979; Powderly, 1976). 다시 말해서, 단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을 제시하는 Care Label이 부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Powderly, 1976).

FTC규정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84년 개정되었다(Federal Trade Commission, 1984).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더라도 의류를 세탁, 보관할 수 있는 단지 한가지 방법만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의류사용에 필요한, 완전한 세탁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의류에 손상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부 방법에 관한 경고(warning)도 제시되어야 한다. 수정된 규정은 Care Label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규격화 시키고 명료하게 만들었지만, Care Label이 소비자를 잘못 인도하거나(Cook, 1984; Gannet News Service, 1989)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International Fabricare Institute, 1988).

부적절한 정보제공에 관한 우려때문에 International Fabricare Institute(IFI)는 1988년초 Care Label에 관한 설문조사에着手하였다(IFI, 1988). 조사목적은 소비자의 Care Label에 관한 관심과, 문제가 되는 의류제품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이를 FTC에 전달하는데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Kapesis, 1989). 그러나,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표기된 방법으로 실제로 세탁하여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 부적절성을 정당화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정도의 차이를 명백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는 세부적인 세탁지침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Care Label을 만드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Care Label이 나오게 된다. 그

러나, 의류제품들은 세탁에 각기 다르게 반응을 나타내므로 그 부적절성을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Lau, 1969). 그러므로, 소비자는 부적절한 정보를 전하는 Care Label에 따라서 세탁을 했을 경우 피해를 보게된다.

2. 연구의 필요성

소비자는 의류제품이 갖는 복합적인 특성과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의류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이 제공하는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Care Label이 부적절한 세탁방법을 제공할 경우 부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잘못된 세탁방법에 의해 세탁했을 경우 물품교환 또는 배상을 위하여 시간을 소모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세탁한 의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이러한 손실을 막고 구매한 의복을 장기간 착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탁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어느 정도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파악 하므로써 구매한 의류제품 세탁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의류제품이 생산되어지는 지역에 따라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므로써 생산지에 따라 Care Label이 제공하는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의류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명시된 세탁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본 후, 2) 의류제품 생산지(미국산 제품, 수입제품)에 따라서, 더 나아가 1988년 IFI Care Label 캠페인 이전과 이후에 Care Label

에 명시된 세탁방법이 부적절하게 표시된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 미국산 의류제품과 미국으로 수입된 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세트1)과 캠페인 이후(세트2)의 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에 걸쳐서 미국 북부와 중부에 소재한 3대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 의해서 얻어졌다. 자료수집자들이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6종류의 복품목을(여성바지, 여성브라우스, 여성스웨터, 남성바지, 남성셔츠, 남성스웨터)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제품에 부착된 Care Label에 명시된 세탁방법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므로써 1147표본이 얻어졌다. 세탁에 관련된 FTC용어에 근거한 체크리스트(Checklist)가 본 연구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는 섬유혼용률, 제품생산지, 세탁방법, 세탁 및 건조 온도, 표백제 및 다림질 사용 여부, 세탁시 경고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Care Label 자료는 크게 두 목록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제품과 대만, 한국, 홍콩,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의류제품이었다. 또한, 자료는 2세트로 분류되었는데, 첫번째 세트는 605표본으로 1987년에서 1988년에 수집된 자료에서 얻어진 것이며, 두번째 세트는 534 표본으로 1989년에 수집된 자료에서 얻어졌다. 사용된 모든 문항이 명명척도에 의해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통계처리방법은 χ^2 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산제품과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사이에, 또한 세트(1988년 IFI Care Label 캠페인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

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세탁방법이(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 명시된 경우, 두 가지 건조방법이 명시된 경우, 드라이크리닝이 물세탁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찬물온도에 세탁에 중간온도 건조방법이 명시된 경우, 건조대 건조방법에 건조온도가 명시된 경우 Care Label이 부적절하게 명시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Care Label에 명시된 세탁방법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크리닝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지만 물세탁에 초점을 두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류제품 Care Label에 명시된 세탁방법에는 물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건조방법, 표백제 및 다림질 사용 여부, 세탁 및 건조 온도, 세탁시 경고사항 등이 있었다. 생산지 및 세탁방법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가 〈표 1〉과 같이 분류되었다. 세탁방법(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에 관계없이 미국으로 수입된 의복에 부착된 Care Label의 수가 미국에서 생산된 의복의 Care Label 수보다 많았다. 이것은 미국산보다 미국내에 수입된 의류제품에 더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생산지와 세트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의류제품에 물세탁 방법이 적혀 있었다. 드라이크리닝 표시가 세트 1보다 세트 2에서 감소하였다. 두세트 모두에서 약 10%의 Care Label에 드라이크리닝과 물세탁 두 방법이 모두 적혀 있었다. 이러

한 Care Label의 대부분은 수입의류제품에서 발견되었다.

Care Label 규정은 두 세탁방법(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이 다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둘 중 한가지 방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방법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다면 둘 다 제시될 수 있다. 두 방법이 다 제시된다는 것이 Care Label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정보를 갖게 된다(Dolinsky & Feinberg, 1986). 두 방법이 다 명시된다는 것은 세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두 방법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방법중에 한가지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을때, 그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여 제품이 손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부가적으로 변상을 받기 위해서 소모하는 시간 또는 변상받지 못할 경우 손해비용을 생각해 볼 때 소비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물세탁의 경우 Care Label에 손세탁 또는 기계세탁을 해야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세탁건조에도 유사한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 2〉는 세탁 및 건조 방법을 크게 4부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트 1과 2 모두에 대부분의 Care Label은 기계세탁과 기계건조(tumble dry)를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기계세탁, 기계건조 Care Label이 미국산 의류제품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미국내 수입된 의류제품의 상당한 비율이 손세탁 그리고 건조대건조(air dry)를 해야 한다는 Care Label이 부착되어 있었다.

〈표 1〉 세탁방법

세탁방법	세 트 1			세 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합 계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합 계
물 세 탁	178	318	496	100	354	454
드라이크리닝	9	35	44	6	31	37
물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6	51	57	4	55	59
합 계	193	404	597	110	440	550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표 2〉 세탁 및 건조방법

방법	세트 1		세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기계세탁 기계건조	115 (69%)	141 (44%)	75 (74%)	151 (44%)
기계세탁 건조대건조	34 (21%)	72 (22%)	15 (15%)	61 (18%)
손세탁 기계건조	1	1	1	6 (2%)
손세탁 건조대건조	17 (10%)	109 (34%)	11 (11%)	125 (36%)
합계	167	323	102	343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물세탁의 경우 Care Label에 물의 온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뜨거운 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의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물의 온도는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물의 온도가 명시되지 않는 Care Label은 세탁시 어떤 온도의 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미만의 Care Label에(물세탁시) 물의 온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물의 온도가 명시되었을 경우 미국산 의류제품에는 따뜻한 온도가 수입의류제품에는 찬 온도가 명시되었다.(〈표 3〉 참조)

건조온도의 경우도 세탁온도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건조시켜도 의복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트 1과 2 모두에서, 수입된 의류제품보다 미국산 의류제품의 Care Label에 건조온도가 더 많이 명시되어 있었다.(〈표 4〉 참조)

물세탁할 때 발생되는 손상 또는 소비자가 세탁시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손상에 대해 경고(warning)가 명시되어야 한다. 물세탁 및 표백에 대한 경고가 미국산 의류제품보다 수입된 의류제품에 더 많이 명시되었다.(〈표 5〉 참조) 표백경고는 ‘표백제로 표백을 할 수 없음’(no bleach) 또는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 할 수 있음’(nonchlorine bleach) 등이 있었다. Care Label에 표백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세탁시 판매되는 모든 표백제(염소,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림질에 관한 경고도 조사되었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본 연구에서 분리시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산 의류제품에 비해 수입의류제품의 경우 손세탁을 하여 건조대 건조를 해야하는 제품이 더 많아 건조온도가 더 적게 명시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물세탁 온도의 경

〈표 3〉 세탁방법 및 물온도

	세트 1		세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손세탁 찬 물 온도	12 (7%)	94 (29%)	11 (11%)	75 (24%)
손세탁 따뜻한 물 온도	1 (<1%)	24 (7%)	-	12 (4%)
기계세탁 찬 물 온도	60 (34%)	91 (28%)	24 (23%)	107 (34%)
기계세탁 따뜻한 물 온도	102 (58%)	118 (36%)	68 (66%)	120 (38%)
합계	175	327	103	314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표 4〉 건조온도

	세트 1		세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중간온도	22 (12%)	22 (5%)	31 (30%)	25 (6%)
낮은온도	87 (48%)	144 (36%)	35 (34%)	137 (35%)
기재되지 않음	74 (40%)	237 (59%)	38 (36%)	229 (59%)
합계	183	403	104	391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표 5〉 경고

	세트 1		세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세탁에 관한 경고	105 (41%)	258 (45%)	68 (42%)	302 (48%)
표백제 사용금지	111 (44%)	218 (38%)	65 (41%)	170 (27%)
산소표백제 사용가능	37 (15%)	96 (17%)	27 (17%)	162 (25%)
합계	253	572	160	634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우 찬 온도 그리고 세탁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은 수입의류제품은 자연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탁방법이 더 많이 명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세탁방법의 부적절성에 대한 차이검증

생산자 및 세트에 따른,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의 수는 〈표 6〉과 같다. 세트 1(16%)에 비해 세트 2(12%)에서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의 수가 줄었으며, 생산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미국산 의류제품의 경우 5%가, 미국내 수입된 의류제품의 경우 4%가 줄었다.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이 부착되어 있는 백분율은 미국산 의류제품의 경우 12%, 미국내 수입된 의류제품의 경우 14%가 나타나, 미국내 수입된 의류제품의 경우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가 더 많았다.

가설 1 : 미국산 의류제품과 미국으로 수입된 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χ^2 분석이 사용되었다. 세트 1에서는 미국산 의류제품과 수입의류제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트 2에서는 미국산 의류제품에 비해 수입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더 많이 명시되어 있었다($\chi^2 = 9.35$, df = 1, P<0.01).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수입의류제품을 생산국가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해야 하겠지만, 각 나라별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 수가 얼마나 적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통계처리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산 의류제품에 비해 미국에 수입된 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더 많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입의류제품에 명시된 부적절한 세탁방법지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시해 주고 있다.

가설 2 :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세트1)과 캠페인 이후(세트2)의 의류제품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표 6〉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의 수

세탁방법	세트 1			세트 2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합계	미국산제품	수입제품	합계
· 두가지 세탁방법	9	20	29	1	15	16
· 두가지 건조방법	6	8	14	1	19	20
· 물 세탁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2	2	-	2	2
· 건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21	26	5	3	8
· 찬물온도 세탁에 중간온도 건조	1	3	4	1	3	4
· 건조대 건조방법에 건조온도 기재	3	3	6	1	2	3
합계	24	57	81	9	44	53

1. 세트 1은 1988년 IFI 캠페인 이전에 수집된 자료

2. 세트 2는 1988년 IFI 캠페인 이후에 수집된 자료

있을 것이다.

카이아승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트1과 세트2에 있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표시된 정도의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chi^2=5.85$ df=1, P<0.05). 다시 말해서, 1988년 IFI 캠페인 이후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가 캠페인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88년 IFI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부적절한 세탁방법이 명시된 Care Label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IV. 요약 및 제언

Care Label은 소비자가 구매한 의복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급상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으로 가능한 세탁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제품 가운데 13.6%가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의

류제품보다는 미국으로 수입된 의류제품의 경우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이 더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International Fabricare Institute의 캠페인 이후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 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캠페인 이전에 비해 캠페인 이후 부적절하게 표시된 Care Label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의 목적으로 섬유제품 분야 상품별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1975년 제정되어 그이후 16번 개정되었다. 취급상 주의표시 내역에는 미국의 것과 유사하여, 세탁 방법, 표백제 사용여부, 다림질 방법, 드라이크리닝, 짜는 방법, 건조방법 등이 있다. 미국산 제품의 Care Label 경우 짜는 방법과 건조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의류제품의 경우 주로 기계건조(tumble dry)와 건조대건조(air dry)로 명시되어 있으며 짜는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이 없는 반면, 한국산 의류제품의 경우 '그늘에서 건조', '옷걸이 건조', '뉘어서 건조', '기계 건조' 등이, 짜는 방법에는 '약하게 짜기' 또는 '짜면 안됨'이라는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산 의류제품의 Care Label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기

예,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한국산 의류제품의 Care Label에 관한 문제점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이 강구되어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외국 수출시 한국제품 구매자에게 보다 많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Care Label의 규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외국산 의류제품이 수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의류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류제품에 부착되는 Care Label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므로써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1.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섬유 혼용률에 따른 세탁방법의 부적절성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명시된 섬유혼용률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섬유 혼용률을 간단히 검사할 방법이 모색된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섬유 혼용률에 따른 세탁방법의 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Black & Judelle(first names not given), Preliminary report of a nation-wide survey of informative labeling in department stores, National Retail Merchants Association, 1938.
- 2) Cook, F., AATCC international aims at testing responsibilities, *Textile World*, 134(September), 1984, 77-78.
- 3) Cox, S.R., Coney, K.A., & Ruppe, P.F., The impact of comparative product ingredient information,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2, 1983, 57-69.
- 4) Dolinsky, C. & Feinberg, R.A. Linguistic barriers to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overload in the Hispanic population, *Psychology and Marketing*, 3, 1986, 261-271.
- 5) Federal Trade Commission,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 Promulgation of trade rule and statement of basis and purpose, *Federal Register*, 35(December 16), 1971, 23883.
- 6) Federal Trade Commission,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and certain piece goods, 16, 1984, CFR 423.
- 7) Fortess, F.(1971), Consumerism and the textile industry, *Textile Chemist and Colorist*, 3(May), 1971, 47-50.
- 8) Flynn, P.J. Labels for consumer satisfaction, *Textile Chemist and Colorist*, 1(November), 1969, 27-28.
- 9) Gannett News Service, Beware misleading clothes Labels, *Lafayette Journal Courier*, December 9, 1989, C2.
- 10) Hotte, G., Fiber peace, *Textile World*, 102 (March), 1952, 138-139, 410-411.
- 11) International Fabricare Institute, Consumer care label survey form, *IFI Fabricare News*, July, 1988, 5.
- 12) Kapesis, D. Label with care, *IFI Fabricare News*, September, 1989, 14.
- 13) Laun, L. Wanted : Educated consumers and a consumer educated industry, *America's Textile Reporter*, 83(February), 1969, 10-11, 39.
- 14) Mazis M.B., Staelin, R.K., Howard, B., & Salop, S., A Framework for Evaluating consumer information regulation, *Journal of Marketing*, 45 (Winter), 1981, 11-21.
- 15) Nagel, J. Textile labeling and the consumer, *American Dyestuff Reporter*, 68(March), 1979, 15-16.
- 16) Powderly, D. Care labeling : Success or failure?, *Textile Chemist and Colorist*, 8(September), 1976, 41-43.
- 17) 공업진흥청,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1994 6월.